(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서울시 주요 정책의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왔으나, 과도한 경쟁 유발,
평가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치구 간 협력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치구 간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는 한편,
사업 운영 방식과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 시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의 제출 기한을 명확히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 규정을 심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조정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넷째,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에서 ‘즉시 차등’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 간 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